

공 연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공연법」 제11조제1항 시행(2025.3.25.)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식 개정

2. 주요내용

재해대처계획 신고 서식 처리절차에 경찰서를 협조기관에 추가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규제심사 실시 전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 신고)서” 처리절차 협조기관에 “경찰서(재난담당부서)”를 추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 변경신고서 신고내용 ①~⑦ (생략) (뒤쪽) 유의사항 (생략)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 변경신고서 신고내용 ①~⑦ (현행과 같음) (뒤쪽)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table><tr><th colspan="3">처리절차</th></tr><tr><th rowspan="2">신청인</th><th>처리기관</th><th>협조기관</th></tr><tr><th>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th><th>소방서(방재담당부서)</th></tr><tr><td>신청</td><td>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td><td>통보 → 접수 및 회람</td></tr></table>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신청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통보 → 접수 및 회람	<table><tr><th colspan="3">처리절차</th></tr><tr><th rowspan="2">신청인</th><th>처리기관</th><th>협조기관</th></tr><tr><th>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th><th>소방서(방재담당부서) 경찰서(가담담당부서)</th></tr><tr><td>신청</td><td>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td><td>통보 → 접수 및 회람</td></tr></table>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경찰서(가담담당부서)	신청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통보 → 접수 및 회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신청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통보 → 접수 및 회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경찰서(가담담당부서)																					
신청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통보 → 접수 및 회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44